

독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

2014. 6. 17.

입법평가 자료 14-17-②

독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

2014. 6. 17.

초청포럼 일정

1.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4년 6월 17일(화) 15:00 ~ 16: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

2. 주 제

독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

3. 강연자 및 통역자

강연자 : Dr. Gottfried Konzendorf

(독일 연방내부부 담당관 · Speyer 행정대 겸임교수)

통역자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정창화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 참석 대상

관심있는 직원

Contents

■ Gesetzgebungsprozess und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Deutschland

● Gesetzgebung und Gesetzescontrolling: Verfahrensablauf, v. a. innerhalb der Bundesregierung (vereinfacht)	7
● Gesetzescontrolling: Verpflichtungsgrad und Prüfinstanz	8
● Beispiel 1: Online-Konsultation zum Entwurf des Bürgerportalgesetzes	8
● Beispiel 2: Datenschutz-Audit-Gesetz	9
● Gesetzgebung und Gesetzescontrolling: Verfahrensablauf, v. a. innerhalb der Bundesregierung (vereinfacht)	9
● Gesetzescontrolling: Verpflichtungsgrad und Prüfinstanz	10
● Darstellung: Gesetzesfolgen im Vorblatt hier: Erfüllungsaufwand	10
● Gesetzgebung und Gesetzescontrolling: Verfahrensablauf, v. a. innerhalb der Bundesregierung (vereinfacht)	11
● Gesetzescontrolling: Verpflichtungsgrad und Prüfinstanz	11
● Beispiel: Anerkennung im Ausland erworbener Berufsqualifikationen (Anerkennungsgesetz)	12
● Einfluss Performace Management: Faktoren	12
● Literaturhinweise	13

■ 독일의 입법절차와 입법평가

● 입법과 입법통제: 연방정부내에서의 절차과정(간략화)	15
● 입법통제: 의무화의 정도와 심사심급	16
● 사례 1: 민간포탈법률안에 대한 온라인-컨설팅	16
● 사례 2: 정보보호법(Datenschutz-Audit-Gesetz)	17
● 입법과 입법통제: 연방정부내에서의 절차과정(간략화)	17
● 입법통제: 의무정도와 심사심급	18
● 해설: 표지에서의 입법평가 현상황: 이행비용	18
● 입법과 입법통제: 연방정부내에서의 절차과정(간략화)	19
● 법률통제: 의무화의 정도와 심사심급	19
● 예: 외국에서 획득한 직업자격의 인정 (인정법률 : Anerkennungsgesetz)	20
● 성과 관리(Performace Management)영향: 요소	20
● 참고문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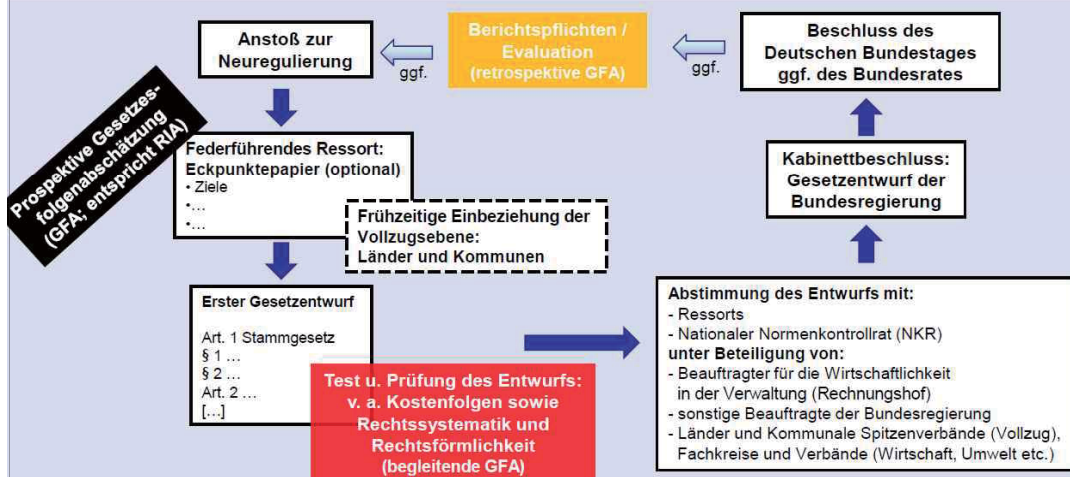
■ 회 의 록

● 회 의 록	23
---------------	----

Gesetzgebungsprozess und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Deutschland

Prof. Dr.
Gottfried Konzendorf

Gesetzgebung und Gesetzescontrolling: Verfahrensablauf,
v. a. innerhalb der Bundesregierung (vereinfacht)



Gesetzescontrolling: Verpflichtungsgrad und Prüfinstanz

P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 (optional):

- Entsprich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Anwendung von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empfohlen
- Anwendungshäufigkeit: abhängig von Politikfeld (z. B. Umwelt ↑)
- Prüfinstanz: Federführendes Ressort

Beispiel 1: Online-Konsultation zum Entwurf des Bürgerportalgesetzes

Projekthigh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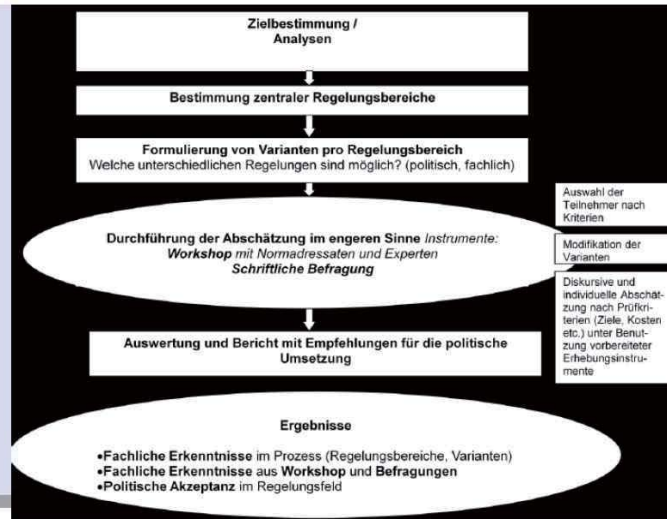
- 4 Themenbereiche des Bürgerportalgesetzes
 - Meinungsabfrage per Multiple Choice und Freitextfeld
 - Bewertung anderer Beiträge Kommentarfunktion zu den einzelnen § des Bürgerportalgesetzes
- Hintergrundinformationen (FAQ, Kurzfilm, etc.)
- Moderierter Dialog
- Chat mit der Projektleiterin zur „Halbz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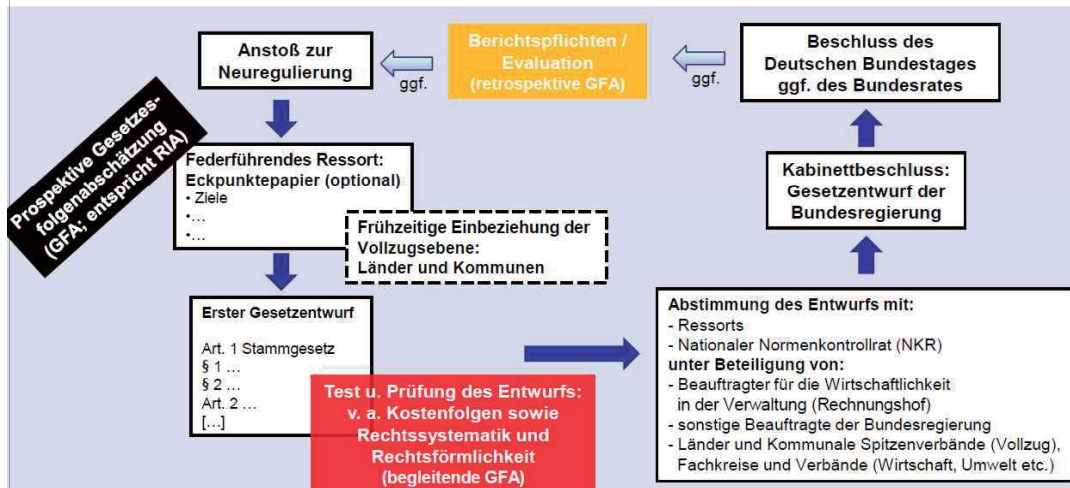
Ergebnis:

- ✓ mehr als 11.000 Besucher in 3 Wochen (20.11.-12.12.2008)
- ✓ mehr als 1.300 Textbeiträge
- ✓ Jeder 10. hinterließ mindestens einen Textbeitrag

Beispiel 2: Datenschutz-Audit-Gesetz



Gesetzgebung und Gesetzescontrolling: Verfahrensablauf, v. a. innerhalb der Bundesregierung (vereinfacht)



Gesetzescontrolling: Verpflichtungsgrad und Prüfinstanz

Begleitende GFA - Prüfung und Test des Entwurfs:

- Erfüllungsaufwand: Anwendung durch federführendes Ressort verpflichtend (GGO); Prüfinstanz: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 Pilotierung E-Government-Leitfaden
- Sprachprüfung (Verständlichkeit): Beratung durch Gesellschaft für Deutsche Sprache (Sitz BMJ); Einbeziehung optional
- Weitere Instrumente - optional: z. B. Planspiel (Prüfung: Aufbau- und Ablauforganisation)
- Rechtssystematische und rechtsförmliche Prüfung: Anwendung verpflichtend; Prüfinstanz: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MJ)

Darstellung: Gesetzesfolgen im Vorblatt hier: Erfüllungsaufwand

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Förderung Deutscher Auslandsschulen (Auslandsschulgesetz - ASchulG)

A. Problem und Ziel

Das Auslandsschulwesen vermittelt im Ausland ein nachhaltig positives Bild von Deutschland. ...

B. Lösung

Ziel des Gesetzes ist es, das Auslandsschulwesen entsprechend der Entschließ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30.05.2008 zukunftssicher ...

C. Alternativen

Fortführung der bisherigen Förderpraxis ohne gesetzliche Grundlage; keine Zukunftssicherheit.

D. Haushaltsausgaben ohne Vollzugaufwand

Das Gesetz führt insgesamt zu **keinen Mehrausgaben** ...

E. Erfüllungsaufwand

a) Erfüllungsaufwand für die Wirtschaft

- keiner -

b) Erfüllungsaufwand für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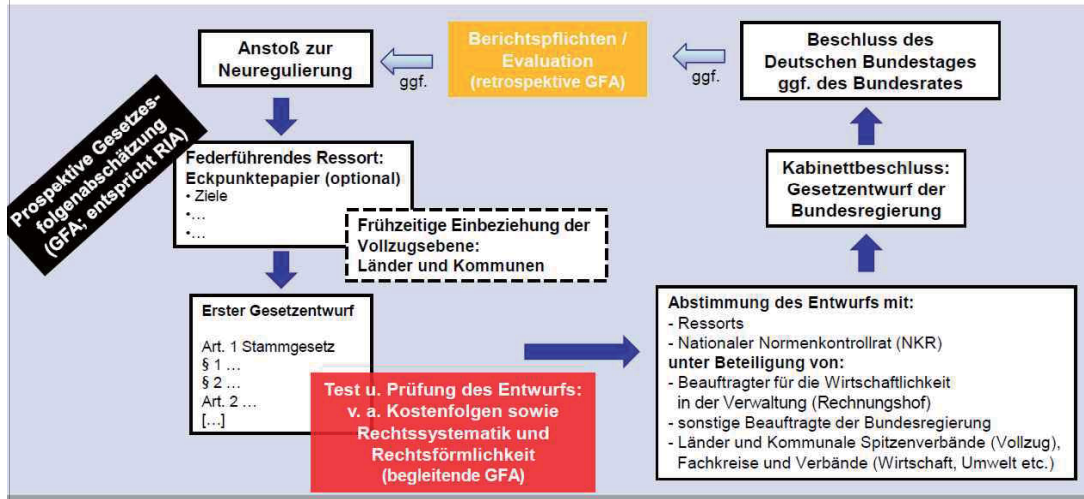
- keiner -

c) Erfüllungsaufwand für die Verwaltung

Reduzierung des Aufwandes für den Bund um jährlich 81 Tsd. Euro. Einmaliger Umstellungsaufwand für den Bund von 123 Tsd. Euro verteilt auf drei Jahre.

Neu: gesetzlicher Anspruch für
erfolgreiche Auslandsschulen;
bisher freiwillige Leistung

**Gesetzgebung und Gesetzescontrolling: Verfahrensablauf,
v. a. innerhalb der Bundesregierung (vereinfacht)**



Gesetzescontrolling: Verpflichtungsgrad und Prüfinstanz

Retrospektive GFA: Berichtspflichten / Evaluation

- Vielfach Berichtspflichten und Wirkungsanalysen in Gesetzen
 - zuständig: Federführendes Ressort
- Seit 2013 ab eine Mio. Euro Erfüllungsaufwand Evaluation verpflichtend
 - zuständig: federführendes Ressort
 - Prüfinstanz: NKR
 - Flexible Methodik
- Art. 91 d GG (Leistungsvergleiche; 2009)
 - bislang geringe Nutzung
 - kein Management

„Bund und Länder können zur Feststellung und Förderung der Leistungsfähigkeit ihrer Verwaltungen Vergleichsstudien durchführen und die Ergebnisse veröffentlichen“

Beispiel: Anerkennung im Ausland erworbener Berufsqualifikationen“ (Anerkennungsgesetz)



- Analyse und Evaluation der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sowie der bestehenden Anerkennungspraxis in den Ländern (Finanzierung: Europäischer Sozialfonds, BMAS)
- Ergebnis: Berufliche Anerkennung geprägt durch Regelungslücken und einen unübersichtlichen Anerkennungszugang (Organisation) (vgl. Englmann/Müller 2007, S. 33)



Neuregulierung: „Gesetz zur Verbesserung der Feststellung und Anerkennung im Ausland erworbener Berufsqualifikationen“ (Anerkennungsgesetz vom 6.12.2011)

Einfluss Performace Management: Faktoren

Datenorientierte Faktoren

- Einpassung der Ergebnisse in politisches Paradigma - keine „Unzeit“-gemäßen Informationen (Hinweis: Prinzip des Randes)
- Hohe Qualität (Evidenz, Relevanz) der Information (keine Schablonen)
- Rechtzeitige Informationsbereitstellung (vor parteipolitischer Positionierung)

Prozessorientierte Faktoren

- Teil-(Öffentlichkeit) herstellen (Events, Veröffentlichungen)
- Akteursbasis erweitern (strategische Allianzen)
- Interaktion – Politik, Verwaltung/Evaluatoren, Adressaten

Vermutungen:

- Faktor Interaktion hat großen Einfluss auf die konkrete Ausgestaltung der anderen Faktoren
- Aufgrund komplexer Wirkungsverläufe müssen erfolgreiche Verfahren Adressaten als soziale Akteure einbeziehen („verstehende“ Evaluation)

Literaturhinweise

- Böhret, C. / Konzendorf, G., 2001,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 Baden-Baden.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08, Handbuch der Rechtsförmlichkeit.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Hrsg.), 2012, Handbuch zur Vorbereitung von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Arbeitshilfe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
- Die Bundesregierung, 2012, Leitfaden zur Ermittlung und Darstellung des Erfüllungsaufwands in Regelungsvorhaben der Bundesregierung.
- Englmann, B./Müller, M., 2007, Brain Waste. Die Anerkennung von ausländischen Qualifikationen in Deutschland, Augsburg.
- Konzendorf, G., 2011,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Blanke, B. u.a. (Hrsg.), Handbuch zur Verwaltungsreform, Wiesbaden .
- Konzendorf, G., 2013, Zum Einfluss von Evaluationen auf die politische Entscheidungsfindung, Verwaltung und Management, Verwaltung und Management, 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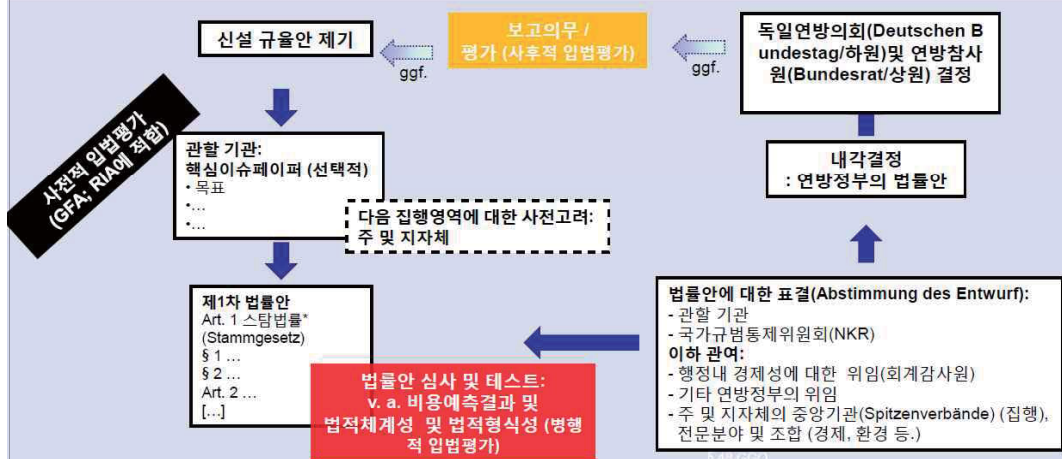


독일의 입법절차와 입법평가

고트프리트 콘첸도르프 교수



입법과 입법통제: 연방정부내에서의 절차과정(간략화)



* 역사주 - 특정 사실관계와 관련해 최초 공포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

입법통제: 의무화의 정도와 심사심급

사전적 입법평가(선택적)

- 적합: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 연방내부부 적용 권고
- 적용빈도: 정책영역에 구속적(환경영역의 경우 ↑)
- 심사심급(Prüfinstanz): 관할 기관(Federführendes Ressort)

사례 1: 민간포탈법률안에 대한 온라인 -컨설팅

프로젝트 요점

- 민간포탈법률의 4개 테마영역
 - 다양한 선택을 통한 의견문의(Meinungsabfrage) 자유텍스트영역(Freitextfeld)
 - 민간포탈법(Bürgerportalgesetz)의 개별법률 조항에 대한 다른 논문의 주석기능의 평가
- 배경정보(QnA, 미니필름, 등)
- 조절된 대화(Moderierter Dialog)
- 하프타임을 위한 프로젝트라이터와의 대화(C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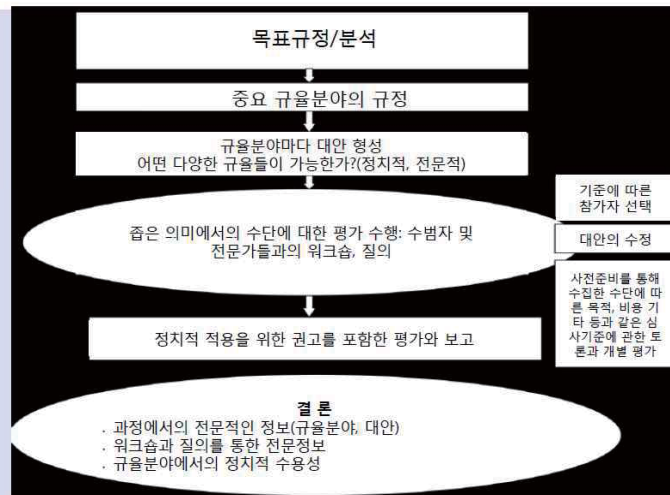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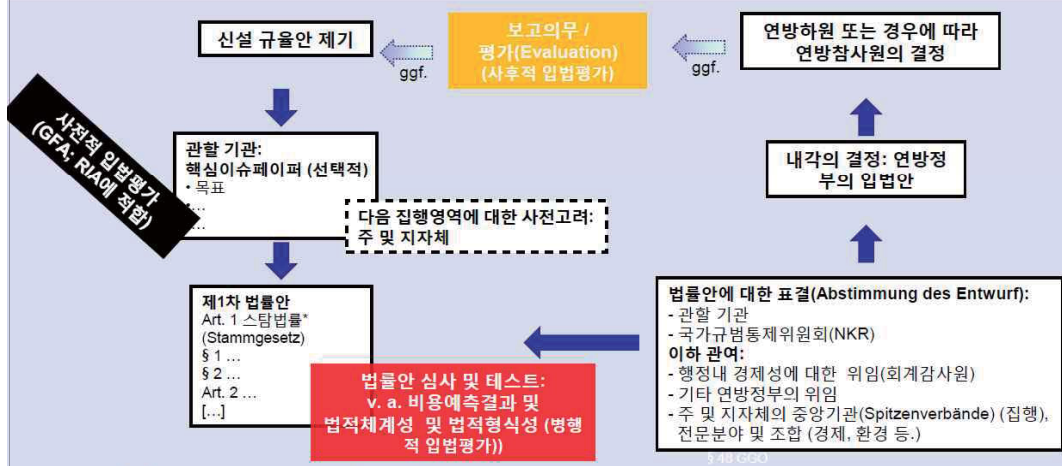
- ✓ 3주 내 11.000명 이상 방문 (20.11.-12.12.2008)
- ✓ 1300개 이상의 텍스트논문(Textbeiträge)
- ✓ 10 개마다 최소 1개의 텍스트 논문을 남김



사례 2: 정보보호법(Datenschutz-Audit-Gesetz)



입법과 입법통제: 연방정부내에서의 절차과정(간략화)



* 역사주 - 특정 사실관계와 관련해 최초 공포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

입법통제: 의무정도와 심사심급

병행적 입법평가 – 법률안의 심사와 테스트:

- 이행비용: 관할기관에 의한 의무적 적용(GGO); 심사심급: 국가규범통제위원회
- 조종-E-정부-지도원리
- 언어적 심사(이해가능성): 연방사법부내에 위치한 독일어에 관한 회의에 의한 협의; 참작 임의적
- 그밖의 도구- 임의적: 예, 시뮬레이션(심사: 상부조직과 진행조직)
- 법체계성 및 법형식성 심사: 의무적인 적용; 심사심급: 연방사법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MJ)

해설: 표지에서의 입법평가 현상황: 이행비용

외국에 위치한 독일학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외국독일학교법 - ASchulG)

A. 문제와 목표

외국에 위치한 독일학교는 외국에서 독일의 지속가능한 긍정적 상을 제시한다

B. 해결책

법률의 목적은 외국에 위치한 독일학교가 2008년 5월 30일 연방하원의 결정에 부응하여 미래지향적인....

C. 대안

법적근거없는 지금까지의 후원실무의 지속: 미래의 확실성 결여

D. 집행비용을 제외한 예산지출

전체적으로 법률은 기존보다 더 많은 지출을 유발하지 않는다

E. 이행비용

a) 경제를 위한 이행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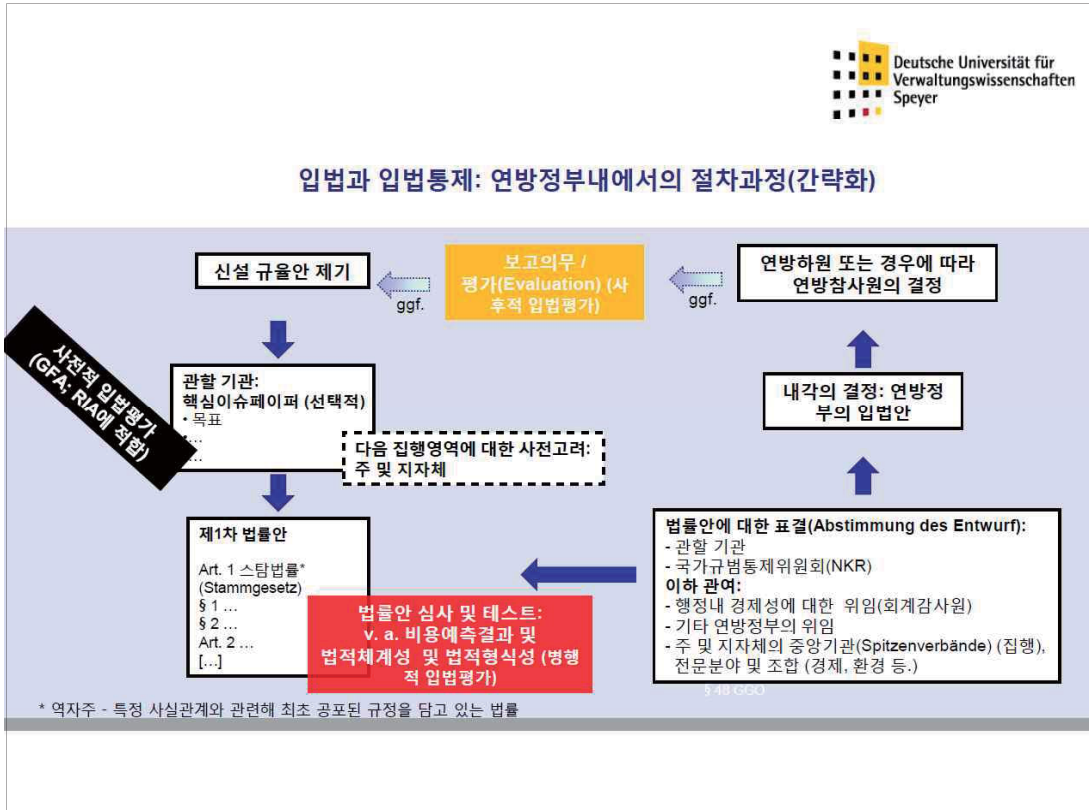
- 없음 -

b) 시민을 위한 이행비용

- 없음 -

c) 행정을 위한 이행비용

연방에 있어 매년 8만1천 유로가량의 비용 축소. 12만 3천유로의 연방에 대한 일회적인 적용비용이 3년에 걸쳐 분할됨.



Deutsche Universität für
Verwaltungswissenschaften
Speyer

법률통제: 의무화의 정도와 심사심급

사후적 입법평가: 보고의무 / 평가

- 법률에서 다양한 보고의무와 효과분석
 - 소관: 관할기관(Federführendes Ressort)
- 2013 이후 백만유로부터 이행비용 의무적 평가
 - 소관: 관할기관(Federführendes Ressort)
 - 심사심급: 국가규범통제위원회(NKR)
 - 유동적인 방법
- 기본법 제91 d 조(역량비교; 2009)
 - 지금까지 소극적 활용
 - 관리(Management)의 부존재

„연방과 주는 각각의 행정역량의 확인과 지원을 목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예: 외국에서 획득한 직업자격의 인정
(인정법률 : Anerkennungsgesetz)**



- 유효한 법규와 여러나라에 현존하는 인정실무(Anerkennungspraxis)에 관한 분석과 평가
(자금조달: 유럽 사회펀드(Europäischer Sozialfonds), BMAS)
- 결론: 법률의 흠결과 체계화되지 않은 승인과정(승인조직)을 통한 직업의 인정 (vgl. Englmann/Müller 2007, S. 33)



규율의 신설: „외국에서 획득한 직업자격의 승인 및 확인의 개선에 관한 법률“ (2011년 12월 6일자 인정법률: Anerkennungsgesetz)

성과 관리(Perfarmace Management)영향: 요소

<p>정보지향적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범례에 해당하는 결론에 적합-”부적절한 시간(Unzeit)”은 없음-정보에 따름(근거: 경계의 원칙/Prinzip des Randes) • 정보(고정형식없음)의 높은 품질(정확성, 중요성) • 적시의 정보제공(정당정치적인 위치설정 이전에)
<p>과정지향적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재건 (행사, 출판) • 행위자 기반 확장(전략적 제휴) • 상호작용- 정책, 행정/ 평가, 수범자
<p>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소의 상호작용은 다른 요소들의 구체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복잡한 효과로 인해 성공적인 절차는 수범자들을 사회적 주체로 고려해야만 한다. („이해가능한“ 평가)



참고문헌

- Böhret, C. / Konzendorf, G., 2001,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 Baden-Baden .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08, Handbuch der Rechtsförmlichkeit.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Hrsg.), 2012, Handbuch zur Vorbereitung von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Arbeitshilfe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
- Die Bundesregierung, 2012, Leitfaden zur Ermittlung und Darstellung des Erfüllungsaufwands in Regelungsvorhaben der Bundesregierung.
- Englmann, B./Müller, M., 2007, Brain Waste. Die Anerkennung von ausländischen Qualifikationen in Deutschland, Augsburg.
- Konzendorf, G., 2011,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Blanke, B. u.a. (Hrsg.), Handbuch zur Verwaltungsreform, Wiesbaden .
- Konzendorf, G., 2013, Zum Einfluss von Evaluationen auf die politische Entscheidungsfindung, Verwaltung und Management. Verwaltung und Management. 4/2013.

회의록

<질의 및 응답>

【참석자 소개】

강연 : Dr. Gottfried Konzendorf (독일 연방내무부 담당관, Speyer 행정대학 겸임교수)

통역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정창화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종합토론>

○ 이원 원장 : 저는 입법평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상식적 범위에서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은 정부 내의 법안 발의나 입법평가 부분인데, 의원들이 제안한 입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부처의 공무원들에게는 입법평가가 사실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저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법평가를 하고 나서 전후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과, 평가 그 자체로 끝나면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좋아졌다든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없앴다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Gottfried Konzendorf : 일단, 독일의 입법안의 90%가 정부입법안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위원회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원회 안이 10%가량 되는데, 그 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입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도입할 때 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이런 제도화를 하게 된 것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설치하게 되었는데, 규범통제위원회의 탄생 배경이 연방 수상청의 강력한 지원, 수상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시 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방 통계청에도 이행비용을 자꾸 측정하라고 하니까 연방통계청에도 실제 1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업무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입법평가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일종의 평가 비슷한 것을 했는데, 일종의 체크리스트 식으로 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체계적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비용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에서는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법평가가 도입되고 나서 그 부분이 도입되었는데 이로써 방법론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강현철 박사 :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던 부분 중에 하나로 콘첸도르프 박사님께서 발제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기본법 제91조 2009년도에 입법화된 내용이 기본법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 입법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 Gottfried Konzendorf : 그건 아닙니다. 그 조항이 입법평가의 근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행정에 나타나는 성과를 각 주마다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사후검증이고, 사후검증은 사후적 입법평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

에 어떻게 보면 결국은 법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강현철 박사 :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입법적인 관여, 입법평가와 관련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나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각국에서 영향분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 Gottfried Konzendorf : 과거에 그런 노력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입법평가에 관한 근거를 둔 예가 스위스 헌법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현철 박사 :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규제총량제(one in, one out)이라는 제도가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규제총량제라 하는데, 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총량제가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있는지요?
- Gottfried Konzendorf : 들어보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은 논의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규제개혁위원회 내지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유럽연합의 대강결정이나 유럽연합의 지침에 의한 이행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범통제위원회에서는 전체 규범체계를 놓고 볼 때 어느 한쪽이 비용이 높아지면 어느 한쪽을 낮추는 꼭 그 총량체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이 각 부처에서 활성화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강현철 박사 : 최근에 비용에 관련된 독일 쪽의 입법평가 논의와 관련하여 분야를 확대시키려는 논의가 있는지요? 표준비용모델과 관련된 이행비용 중심에서 규제비용 측정 쪽으로 전환된다는 논의를 최근에 들었는데 그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만나와서 이행비용에 관련된 논의를 넓히려고 하는 논의가 있는지요?
- Gottfried Konzendorf :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규제비용을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비용모델 자체가 보고업무와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규제로 작용했고, 결국은 25%의 규제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달성했는데, 그 이후에 2011년부터 이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전체이행비용, 다시 말해 한 법률을 적용하다보면 그 법률에 의해서 야기되는 전체 이행비용, 즉 시민, 기업, 행정에 의해 야기되는 이것을 전체 비용을 측정해야 한다 라는 논의가 활발해졌고, 2011년부터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손희두 박사 :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최근의 입법에서 100만유로부터 하도록 규정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한은 몇 년마다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입법평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Gottfried Konzendorf : 이행조항은 개정이 되거나 시행이 되는 경우에 그것이 연방정부로 넘어오면, 몇 년마다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은 없고, 연방정부 내각 의결로서 우리는 100만유로 이상의 이행비용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손희두 박사 :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입법평가연구사업을 맡고 있는 차 박사님이 간략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차현숙 박사 : 저희는 사전에 저희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리고 손박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질문지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표준비용모델 등등 관련된 질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평가했던 게 독일에 어떻게 수용되는지, 그리고 사후적 평가가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입법평가와 관련하여서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지속가능성심사와 관련된 기준이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해서 독일 규범통제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의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사님께서 귀국하신 후에 보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